

[별표 1] <개정 2013.11.4>

소음·진동배출시설(제2조의2 관련)

1. 소음배출시설

가.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·기구

- 1) 10마력 이상의 압축기(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)
- 2) 10마력 이상의 송풍기
- 3) 10마력 이상의 단조기(기압식은 제외한다)
- 4)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
- 5)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(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)
- 6) 10마력 이상의 탈사기
- 7) 10마력 이상의 분쇄기(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)
- 8) 30마력 이상의 변속기
- 9) 10마력 이상의 기계체
- 10)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
- 11) 50마력 이상의 혼합기(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)
- 12)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
- 13) 30마력 이상의 제분기
- 14) 20마력 이상의 제재기
- 15)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
- 16)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(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, 옵셋인쇄기계는 100마력 이상으로 한다)
- 17) 50마력 이상의 압연기
- 18)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)
- 19) 50마력 이상의 성형기(압출·사출을 포함한다)
- 20)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(다이캐스팅기를 포함한다)
- 21)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
- 22) 20마력 이상의 펌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, 「소방법」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)
- 23)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(습식선전기 및 합사·연사기를 포함한다)
- 24) 30마력 이상의 초지기
- 25)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운전기
- 26) 위의 1)부터 25)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(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)인 경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
를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)

참고: 위 26)에서 동력합계 50마력 이상(읍·면·동소재지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)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및 기계·기구
는 실제마력에 1, 20마력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마력에 0.9, 30마력인
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마력에 0.8, 50마력 또는 100마력인 시설 및 기
계·기구는 실제마력에 0.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
상(읍·면·동소재지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)인 경우를 말한다.

나.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·기구

- 1)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
- 2)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
- 3) 자동제병기
- 4) 체관기계
- 5)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
- 6) 40대 이상의 직기(편기는 제외한다)
- 7) 방적기계(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)

다. 그 밖의 시설 및 기계·기구

- 1) 낙하해머의 무게가 0.5톤 이상의 단조기
- 2) 120KW 이상의 발전기(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)
- 3)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
- 4) 석재 절단기(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한다)

2. 진동배출시설(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·기구로 한정한다)

가. 20마력 이상의 프레스(유압식은 제외한다)

나. 30마력 이상의 분쇄기(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)

다. 30마력 이상의 단조기

라.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
역·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)

마.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

바. 50마력 이상의 성형기(압출·사출을 포함한다)

사.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운전기

아.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

참고

1.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$KW \times (3분의 4)$ 으로 하며,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
2.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·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
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